

기계공학과 대학원 종합시험 내규

2004. 3. 5 제정

2006. 9. 1 개정

2013. 3. 1 개정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요람의 종합시험과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① 필기시험은 박사 및 석·박사통합과정에 해당하며, 2과목이상 응시해야 한다.

② 구술시험은 기계공학과 대학원 전 과정에 해당하며, 학위논문 Proposal 및 연구 추진 상황 발표와 예비논문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시행한다.

제3조 (응시자격) ①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.0이상이어야 한다.

②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.0이상이어야 한다.

③ 석·박사통합과정은 4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.0이상이어야 한다.

④ 공통사항 : 외국어시험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종합시험에 응시 가능하며, 학위청구 논문 학기 전에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 (결과) ① 필기시험의 합격 점수는 각 과목별 70점 이상으로 한다.

② 구술시험은 A, B는 합격 C는 불합격이며, 심사위원 2/3이상의 합격으로 그 결과를 사정부에 기입한다.

③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부분합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단, 구술시험의 경우 대학원 관리위원회를 거쳐 부분합격을 인정 할 수 있다.

제5조 (제출서류) 종합시험을 시행한 후, 각 심사위원장(지도교수)은 종합(필기, 구술) 시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며, 종합시험결과보고서는 3년간 보존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4년 3월 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②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③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